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2015. 10. 20. 제정
 2020. 03. 04. 일부개정(1차)
 2021. 09. 01. 일부개정(2차)
 2022. 10. 18. 부분개정(3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래의 행위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삭제) (2021. 9. 1. 삭제)
 - 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다.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라.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직원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4. “협조사”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

- 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2020.3.4. 개정)
-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2020.3.4. 신설)
- 6.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2021. 9. 1. 신설)
- 7. “공직자”란 법 제2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21. 9. 1. 신설)

제3조(이사장의 책무) ① 이사장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직자에게 부패적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2021. 9. 1. 개정)

② 이사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①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 9. 1. 개정)

②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기관·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2021. 9. 1. 개정)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이사장은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공직자나 이에 상당하는 공직자를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부패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021. 9. 1. 개정)

② 이사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021. 9. 1. 개정)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2021. 9. 1.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공직자가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2021. 9. 1. 개정)

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2021. 9. 1. 신설)

⑤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2021. 9. 1. 신설)

⑥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21. 9. 1. 개정)

제6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부패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부패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법 제58조에 따른 부패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같음한다. 이때 부패신고자 또는 부패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부패신고자의 인적사항, 부패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감사실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021. 9. 1. 개정)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직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021. 9. 1. 개정)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감사·조사·수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2021. 9. 1. 개정)

④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감사·조사·수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수사의뢰, 고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급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을 준용할 수 있다. (2021. 9. 1. 개정)

⑤ 책임관은 감사·조사·수사과정에서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021. 9. 1. 개정)

⑥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 또는 이첩·송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패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21. 9. 1. 개정)

⑦ 책임관은 신고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021. 9. 1. 개정)

⑧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조사·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조사·수사 종류 후 처리 방향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2021. 9. 1. 개정)

제7조의2(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

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2021. 9. 1. 신설)

제7조의3(보호·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

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2020.3.4. 신설) (2021. 9. 1. 개정)
 1. 개정)

제8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 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거래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021. 9. 1. 개정)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2020.3.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책임관은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 9. 1. 개정)

② 이사장은 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20.3.4. 신설) (2021. 9. 1. 개정)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2021. 9. 1. 개정)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3.4. 개정) (2021. 9. 1. 개정)

②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2020.3.4. 개정) (2021. 9. 1. 개정)

③ 이사장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20.3.4. 신설) (2021. 9. 1. 개정)

제12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020.3.4. 개정)

제13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사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020.3.4. 개정)

제14조(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분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2020.3.4. 개정)
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2021. 9. 1. 신설)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제15조(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① 이사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신고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16조(협조자 보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분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0.3.4. 개정)

제17조(포상 및 보상 등)

- ① 거래소는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거래소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은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공공기관은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및 협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신고 및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법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 포상금·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은 보상·포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하며,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사유가 중복 적용될 경우 같거나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어느 한 가지만 지급한다.

제18조(보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은 제외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③ 신고로 인해 불이익 처분을 받고 원상회복 등을 위해 치료·이사 또는 실직·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
- ④ 보상금의 지급은 별표 1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19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통고처분·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거래소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3천만원 이하로 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100분의 20이내로 하되 3천만원 이하로 한다.

- ③ 포상금의 지급은 별표 2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20조(보상·포상 심의) ① 제18조 및 제19조의 보상 및 포상금 심의를 위하여 「보상·포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상·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상·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
1. 위원장 : 감사 또는 감사가 지명한 자
 2. 위원 : 감사실장, 업무관련 처·실 직원 3명(1~3직급) 및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감사가 지명한다.
 3. 간사 : 감사실 담당직원 1명
- ③ 제2항제2호의 외부위원은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 시민단체, 학계, 회계·회계·법무 자문법인, 청렴옴부즈만 등 전문가 중에서 선임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회 개최 정족수에 외부위원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⑤ **보상심**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⑥ 보상금 및 포상금의 심의·결정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확인결과를 최종 보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부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당해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22조(보상금 신청 및 접수 등) ① 부패행위 신고자는 제17조에 따른 보상금 신청사유가 있어 거래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 제8호의 신고자보상금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신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③ 보상금 지급신청은 거래소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인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3조(보상금의 지급절차 등) ① 책임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보상금 지급사유의 존재, 거래소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 확정 여부 및 그 규모, 신고자의 부패행위 가담 여부 및 정도 등 보상금 지급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 ② 보상금의 결정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③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한 의견이 나누어져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 ④ 위원회는 이 지침에 따라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 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 회계담당부서에 지급시기 등을 확인하여 지급을 의뢰한다.
- ⑥ 회계담당부서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 등의 신분과 지급내용 등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의 접수·처리) ① 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서의 접수는 제22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심의한 후 의결내용을 제23조를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25조(지급시기) ①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거래소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하되, 법률관계의 확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는 보상금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은 거래소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

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22조에 의해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26조(보상금 등의 지급제외 및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실·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신고 전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한 사항
6. 업무분장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부패행위의 감사·조사 등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7. 신고의 대상이 된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8.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9.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포상금 또는 보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고자 등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2.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2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거래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거래소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거래소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2021. 9. 1. 개정)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거래소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020.3.4. 개정)

제28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2020.3.4. 개정)

제30조(보칙)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서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5. 10. 30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내부공익신고업무처리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 3. 4.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의 개정 규정은 2019. 10. 17.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 10. 18.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상금 지급기준

1. 거래소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 발생 시의 보상기준

| 수익증대(손실감소)액 | 보상금 지급기준 |
|---------------------|-----------------------|
| 1천만 원 이하 | 10% |
| 1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1백만 원+1천만 원 초과금액의 5% |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3백만 원+5천만 원 초과금액의 3% |
| 1억 원 초과 | 4백5십만 원+1억 원 초과금액의 2% |

* 수입증대 또는 손실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일로부터 6개월까지 발생하는 예상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보상금 지급한도 및 중복시의 보상기준 등

가. 보상금 지급한도액 : 최대 3천만 원

나. 보상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합산하지 아니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 금액으로 지급

다.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지급 가능

[별표 2]

포상금 지급기준

1. 금전적 처분

| 금 액 기 준 | 유 형 |
|---------------|-----------------------------|
| 가. 3,000만원 이하 | 30억원 이상의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
| 나. 1,000만원 이하 | 10억원 이상의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
| 다. 500만원 이하 |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

2. 거래소의 재산상 손실방지

| 금 액 기 준 | 유 형 |
|---------------|-------------------------------------------------------------------|
| 가. 3,000만원 이하 |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3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
| 나. 1,000만원 이하 |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1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
| 다. 500만원 이하 |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

5. 금품수수 자진신고

| 금 액 기 준 | 유 형 |
|------------|------------------------------------------|
| 3,000만원 이하 | 신고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하되 최고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 |

6.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가.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 등의 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나. 새로운 부패방지시책 도입이나 제도·관행의 개선 등이 이루어진 경우 등

접 수 증

접수번호 20 부패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한국전력거래소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 수 증

접수번호 20 부패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한국전력거래소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등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는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 구분 | 지 급 요 건 |
|-----|-----------------------------------------------------------------------------------------|
| 보상금 |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 |
| 포상금 | 공공기관에 부패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공기관이 위원회에 추천) |
| 구조금 | 부패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등이 위원회에 신청) |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 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안내 >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부패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해당 기관의 지도·감독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십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우리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허위신고를 하면 신고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진 경우는 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사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법상 불이익조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입료)을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패신고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 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권익위 신고자에 한함)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공공기관 수입의 4~30%를 지급하지만,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 | | | |
|--------------|-------------------------------------------------------------------------------------------------------------------------------------------------------------------------------------------------------------------------------------------------------------------------------------------------------|---------------------|------|--|
| 신고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 연락처 | | | |
| 부패신고 | 제목 | | | |
| | 접수일자 | | 접수번호 | |
| 신분공개 동의여부 | <p>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부패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p> <p>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p> | | | |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 | | |
|----------------------------------------------------------------------|---------|---------------------------|----------|
| 추천일자 | 접수번호 | 처리기간 | 90일 |
| ① 추천기관 | 추천기관명 | | |
| | 소관부서 | (전화번호) | |
|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 연락처 | | |
| | 소속 | | |
| | 직업(직위) | | |
|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 | | |
| ③ 추천사유 | | | |
| ④ 부패신고 조사결과 | 신고기관 | 신고일자 | 20 년 월 일 |
| | 신고내용 | | |
| | 조사·수사기관 | 결과통지일자 | 20 년 월 일 |
| | 통지내용 | | |
|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없음 | |
| |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없음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 | | |
| 첨부서류 : | | | |
| 20 년 월 일 | | | |
| ⑥ 추천인 : 직위 | | 성명 | (인)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 | |

[별지 제8호서식]

신고자보상금지급신청서

| | | | |
|-----------------------------------------------------------------------|------------------|--------------------------------------------------------------------|----------|
| | | | 처리기간 |
| | | | 90일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거주지 (우편물 수령지) | (전화번호) | |
| 대리인 또는 대표자 | 성명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의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부패신고 조사결과 사항 | 거주지 (우편물 수령지) | (전화번호) | |
| | 접수번호 | 20 | 신고제 호 |
| | 통지일자 | 20 | 년 월 일 |
| | 통지내용 | |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 청구여부 | <input type="checkbox"/> 있음(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없음 | |
| | 수령여부 | <input type="checkbox"/> 있음(금액 :) <input type="checkbox"/> 없음 | |
| 입금계좌 | 은행명 : | 계좌번호 : | |
| 보상금 신청금액 | | | |
|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 | |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첨부서류 : | | | |
| 20 년 월 일 | | | |
| 신청인 (인) | |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 | |
| ※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 및 대리인·대표자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 | | |